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KICS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www.kics.go.kr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The Office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01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개요

- 형사사법 기관간의 IT 고속도로 / 2
- 관련 법률 / 2

02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구축 과정

-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3
- 사건처리절차 –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구축 전 / 3
- 시스템 구축 경과 / 5

03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 전산서버 구축 방안 / 6
- 보안 시스템 마련 / 7
-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운영 / 7

04

주요성과

- 형사사법정보 공동활용 / 8
- 사건의 전자적 처리 : 종이 없는 사건 처리 / 10
-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 11

05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을 통한 새로운 도약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의 필요성 / 13
-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14
- 향후 추진 과제 / 15

※ 참고자료

1. 형사사법포털 휴대폰 서비스 사용방법 / 17
2. 형사사법정보서비스 관련 법률 / 23

형사사법 기관간의 IT 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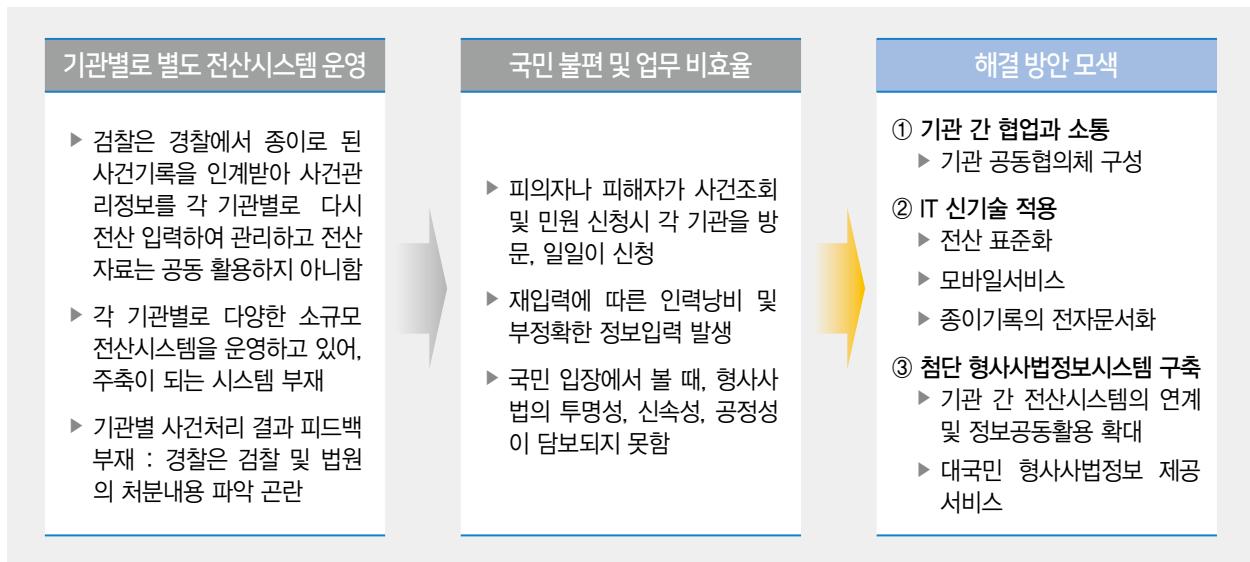
- ▶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은 수사·기소·재판·집행 기관 간에 설치된 'IT 고속도로'입니다. 기관 간에 비포장의 좁은 길을 넓히고 터널을 뚫어 서로 소통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사사건 전산정보를 기관 간에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상대 기관 및 국민에게 투명하게 피드백 하는 IT 종합시스템입니다.
- ▶ 한국의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하여 형사사법기관의 문서 작성을 전자화하고 형사사법 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고 국가 예산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전자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KICS는 2013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법무부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공공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KICS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08. 1. 11. 제정)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리의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10. 1. 25. 제정)
이 법은 약식절차 등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약식절차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축 필요성



사건처리절차 –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구축 전

■ 사건 유형

	사건처리 절차	전산 입력
공판절차 사건	경찰 → 검찰 → 법원 → 법무부 <수사> <기소> <재판> <집행> 예) 살인, 성폭력, 강도, 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기록(종이)을 순차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건관리정보 ② 증거관련정보
약식절차 사건 (벌금)	경찰 → 검찰 → 법원 → 법무부 <수사> <기소> <서면심사> <집행> 예) 단순 폭력,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은 각자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① 정보를 저장하지만, 시스템이 서로 달라 전산상으로 연계 불가능하여, 사건기록을 전달받으면 다시 ①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업무부담 발생
즉결심판절차 사건 (20만원 이하 벌금)	경찰 → 법원 <수사><집행> <재판> 예) 음주소란, 노상방뇨	
범칙금 사건	경찰 예) 과속운전, 신호위반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시스템에 연결된 PDA를 이용하여, 단속 현장에서 바로 출력하여 범칙금 고지서 발부

■ 사건기록(종이)

정보 유형	정보 내용	KICS 이전 관리
① 사건관리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 인적사항(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주소 · 연락처 등), 신병(구속 · 불구속), 지명수배 · 지명통보 · 출국금지, 범죄경력조회, 수사지휘, 수용정보, 사건진행정보 ▶ 처분내역 : 기관별 사건처분 번호, 일자, 내용 	기관 전산에 입력 + 사건기록에 편철
② 증거관련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상 진술 : 조서(피의자 · 피해자 · 참고인), 진술서, 영상녹화조사 CD, 전화녹음 녹취, 원격화상조사 진술 ▶ 압수물 목록 · 사진, 사체 검시 · 부검결과, 진단서, CCTV 분석결과 ▶ 통화내역 조회, 금융 · 회계자료 분석, 컴퓨터 · 핸드폰 디지털분석 결과, 마약성분 분석결과 등 ▶ 수사보고(진행상황, 증거상황, 현장검증) 	사건기록에 편철



시스템 구축 경과

- ▶ '04. 5. 법정부적 차원에서 「전자정부 사업」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적극 추진
 -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은 법무부, 검찰, 경찰, 법원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주축이 되어 '04. 5. 전자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이 구성되었고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절차를 실현하는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e-형사 절차 구현)」를 사업방향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 '10. 7. KICS 개통 및 형사사법포털 대국민 웹서비스 오픈
 - '10. 7. 12. 5년간의 구축사업 끝에 형사사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전달 채널인 형사사법포털이 오픈 되었습니다.
- ▶ '13. 6.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서비스 오픈('16. 6. iOS 모바일 서비스 실시)
 - 웹 환경에서만 제공하던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접속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13. 6. 안드로이드폰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였고 '16. 6. iOS 기반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 '13. 8.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오픈
 - 고소인, 피의자에게만 제공되던 사건조회 서비스를 5대 강력범죄(살인 · 강도 · 성범죄 · 방화 · 중상해)사건 피해자에게도 제공하여 사건조회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 ▶ '17. 3. 형사사법통계시스템 오픈
 -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통계시스템을 표준화 하고, 통계의 정확성,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5. ~ '17. 3단계에 걸쳐 형사사법 공통 통계 및 형사사법 각 기관의 통계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 ▶ '17.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중 「공소권 없음」 사건을 종이 없이 처리하는 「전자불기소」 시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중 「공소권 없음」 사건을 종이기록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 불기소」 시스템을 시행하였습니다.
- ▶ '18. 5.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을 위한 BPR/ISP¹⁾ 사업」 실시
 - 최신 IT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세대 KICS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이 '18.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고, '18. 5.~12.간 법무부 · 검찰 · 경찰 ·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하였습니다.

1) BPR/ISP(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업무 분석 ·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사업

전산서버 구축 방안

<방안 1 : 통합 서버>	<방안 2 : 기관별 서버>
▶ 하나의 통합된 서버를 두고, 각 기관에 해당 분야의 권한을 부여, 사용	▶ 기관별로 별도 서버를 두되, 전산양식을 표준화하여 전산정보 연계
▶ 장점 : 예산 절감, 업그레이드 용이	▶ 장점 : 기관별 관리로 정보보안 강화
▶ 단점 : 기관들의 합의 도출 어려움	▶ 단점 : 막대한 비용, 기관합의의 지연

※ 한국은 각 형사사법기관의 입장을 반영하여 <방안 2>를 채택

사건 유형	KICS 구축 이후의 시스템 변경	
일반절차 사건	▶ ①사건관리정보와 ²⁾ ②증거관련정보 ³⁾ 가 포함된 사건기록(종이)은 종전과 같이 전달 ▶ 각 기관의 구성원은 사건 관련 서류를 KICS를 이용하여 작성 ▶ 모든 사건의 ①사건관리정보를 기관 간에 전산 전달하고, ②증거관련정보는 사건기록(종이)에 편철하여 종전과 같이 전달 ▶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오픈	
약식절차 사건(벌금)	▶ 사건관리정보와 증거관련정보가 포함된 사건기록(종이)은 종전과 같이 전달 ▶ 모든 약식사건의 사건관리정보를 기관 간에 전산 전달하고, 증거관련정보는 사건기록(종이)에 편철하여 종전과 같이 전달 ▶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오픈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사건 중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종이기록을 없애고 완전 전자화 처리 ▶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오픈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 다툼이 없고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경우, 종이기록을 없애고 완전 전자화 처리	
즉결심판절차 사건 (20만원 이하 벌금)	▶ 경찰과 법원 자체적으로 사건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 간에 정보연계는 아직 미실시	
범칙금 사건	▶ 전산시스템에 연결된 PDA를 이용하여, 단속 현장에서 바로 출력하여 범칙금 고지서 발부 ▶ 경찰의 전산시스템으로 원스톱(One-stop) 서비스 가능	

2) 사건관리정보 : 피의자인적사항, 지명수배 · 지명통보 · 출국금지,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정보, 처분내역 등
3) 증거관련정보 : 수사상 진술, 압수물 목록 · 사진, 통화내역 조회, 금융자료, 디지털분석결과, 수사보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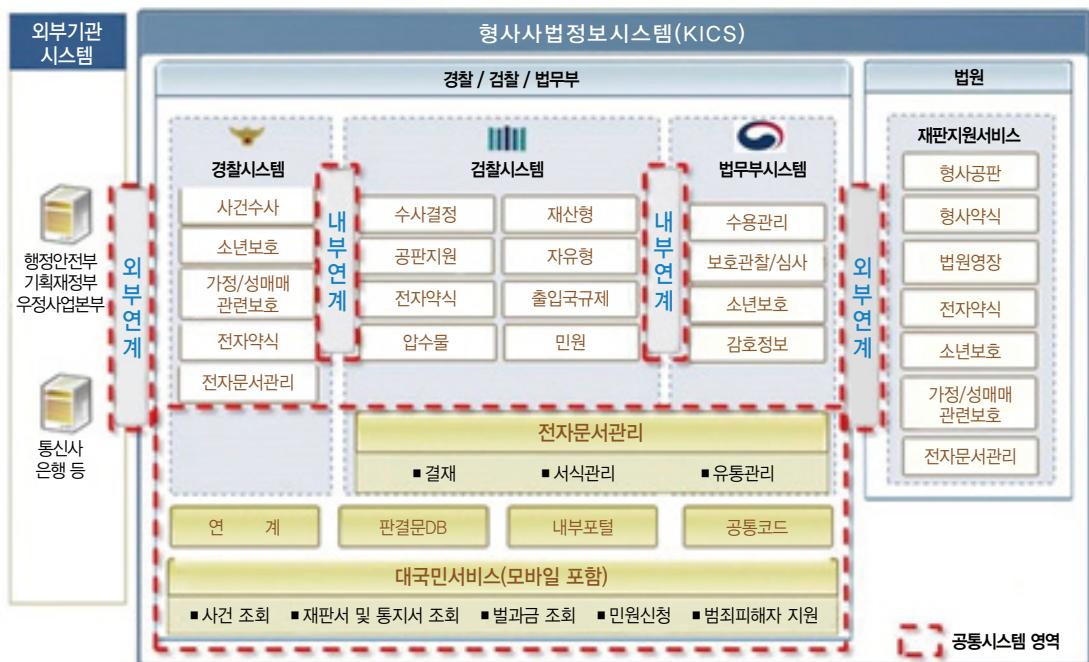
보안 시스템 마련

- ▶ 형사사법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시스템 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해 민간분야에서 사용하는 일반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대신에 공공분야의 인터넷 전용망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형사사법정보 보호를 위해 PC 키보드 보안, 웹 구간 암호화, DB 암호화, 전자문서 출력물 위변조 방지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개인정보암호화 및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과 개인정보 생명주기(수집 및 이용, 파기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운영

- ▶ 각 기관은 KICS 전용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은 경찰 KICS 서버를, 검찰은 검찰KICS 서버를, 법원은 법원KICS 서버를, 법무부는 법무부KICS 서버를 각각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간의 정보연계를 위하여 공통시스템 서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 공통시스템 서버 운영과 기관 간 KICS 협의 업무는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이하 ‘운영단’)이 수행합니다. 운영단은 각 기관의 중립지대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의 직원들이 파견 근무 중입니다(19. 9. 기준 총 23명).
- ▶ KICS 개발, 구축은 굴지의 정보통신 전문기업인 LG CNS가 담당하였고, 구축 직후부터 현재까지 형사사법 각 기관으로부터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탁받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체 구성도



형사사법정보 공동활용

■ 형사사법 기관 간의 사법정보 제공

- 종전에 사전기록 또는 회신서류와 같은 종이를 보고 전산직원이 일일이 입력하던 과중한 업무가 경감되고 전산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찰 · 검찰 · 법원 · 법무부 간에 연계(공동활용)하는 형사사법정보는 총 380종(경찰 제공 76종, 검찰 제공 144종, 법원 제공 98종, 법무부 제공 62종)이고, 형사사법 기관이 외부기관(행정안전부 · 우정사업본부 · 신한은행 ·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가 총 24종입니다.

제공기관	수신기관	주요 공유 정보	건수 (총 380종)
경찰	검찰	피의자 인적사항, 수사자휘건의, 긴급체포승인건의, 영장반환보고, 경찰청 DNA 채취정보 등	72
	법원	소년보호사건송치서 정보	1
	법무부	범죄경력조회(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3
검찰	경찰	송치사건 수리, 처분미상전과 온라인 연계, 검찰직수 후 수사자휘 사건정보, 감정 유치장, DNA 채취정보 등	59
	법원	구공판 공소장, 증거목록, 증인신문신청서 등	42
	법무부	수용지휘서, 형집행지휘서, 벌과금 미납조회결과, 외국인범죄 처분 및 재판결과 등	43
법원	검찰	각종 영장 발부 · 기각일자, 선고 결과, 배당 정보, 공판기일 정보, 상소 정보, 판결문 등	83
	법무부	재감인 소환부, 보호처분 결정문, 판결문, 상담조사 의뢰서 등	15
법무부	경찰	수용자 조회, 보호관찰 대상자정보, 치료감호 대상자 · 종료자 관련 정보, 출입국 사실 등	10
	검찰	재소자 · 출소자 수용정보, 구속피의자 소환정보, 입국시통보, 출입국사실 등	17
	법원	수감 정보, 집행지휘내역, 판결전 조사보고서 등	16
	법무부	가석방자 명단,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치료감호 재원자 · 출원자 정보 등	19

■ 전산정보 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

- ▶ 예전에는 형사사법 각 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공문을 보내 요청하고 종이 문서 형태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보취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문서작성을 위한 종이 구입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 ▶ KICS 이후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취득이 가능해지고 종이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 9. 기준(누계))

■ 검찰 결정문과 법원 판결문 검색 가능

- ▶ KICS 이전에는 다른 기관의 결정문, 판결문을 요청하게 되면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참고할만한 결정문, 판결문을 검색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 ▶ 그러나 KICS 이후에는 컴퓨터로 다른 기관의 결정문, 판결문 파일을 다운받아 그 자리에서 받아볼 수 있고, 결정문과 판결문에 대한 검색시스템이 구축되어 바로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법 통계의 신속 · 정확한 산출 가능

- ▶ KICS 이전에는 경찰과 검찰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기관 간 데이터 공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사법 기관들이 저마다 상이한 통계 산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통계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형사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활용에 한계로 작용하였습니다.
- ▶ 통합시스템인 KICS가 등장한 이후 KICS를 통한 형사사법 기관 간 데이터 공유 기반 하에서 형사사법 통계시스템은 보다 신속 · 정확하게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통계 산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전자적 처리 : 종이 없는 사건 처리

■ 전자약식 시스템의 구현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 ▶ 형사사건 중에서 먼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을 완전 전자화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근거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사건들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사건 처리가 정형화되어 있어 전자적 처리하는 데에 적합합니다.

전자약식의 장점은 ① 종이 없는 사건처리로 인해 친환경적이라는 점, ② 절차가 검찰·법원으로의 종이기록 전달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 ③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사건검색이 가능하다는 점, ④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한 송달로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 ▶ 음주·무면허 사건 중 피의자가 전자화에 동의하는 사건은 수사부터 별금부 과까지 종이기록 전달 없이 100% 전자문서로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KICS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받아 KICS에 보관하여 전송합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문서화 합니다. 법원에서 별금이 발령되면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은 전자메일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SMS)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약식명령문을 조회, 출력한 다음, 별과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가 형사사법포털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한 때에 마치 우편송달이 된 것에 준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건처리 절차

경찰 단속(입건) → 경찰서 출석 조사 → 전자적 송치 → 검찰 사건접수 → 검토 → 전자적 기소 → 법원 사건접수 → 검토 → 약식명령(별금) 발령 → 전자적 송달 → 형사사법포털 열람 → 별과금 납부

- ▶ 전자약식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의 처리기간이 평균 47일에서 25일로 22일 단축되었습니다.



(2019. 9. 기준)

■ 전자불기소처리 시스템 구축 : 공소권없음 처리하는 교통사고 사건

- ▶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건은 종합보험 가입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되기 때문에 사건처리 절차가 간명합니다.
- ▶ 이에, 2012. 6월 『형사사법 정보체계 협의회』⁴⁾에서 전자불기소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 8. 28. 전자불기소시스템이 구축이 완성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 중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근거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 PC 및 휴대전화를 통한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제공

-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은 형사사건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와 안내, 벌과금 납부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입니다.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항목

조회 서비스	사건조회	① 경찰 사건조회, ② 검찰 사건조회, ③ 법원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① 미납벌과금조회, ② 벌과금납부내역조회
	가납금 환급조회	① 가납금환급조회, ② 가납금환급내역조회
	형사보상금 지급조회	① 형사보상금 지급 조회
온라인 민원 서비스 (79종)	민원신청 (38종)	경찰(1종) ①전자약식 철회신청 검찰(33종) ①전자약식 철회신청, ②고소(고발)장 접수증명, ③벌과금납부증명, ④불기소이유고지 청구 등 법원(2종) ①진정서 제출, ②단원서제출 법무부(2종) ①수용증명서, ②출소증명서
	증명서발급 (14종)	검찰(12종) ①고소(고발)장 접수증명, ②벌과금납부증명, ③불기소이유고지 청구, ④사건 처분결과 증명 등 법무부(2종) ①수용증명서, ②출소증명서
	재판서 및 통지서 (27종)	경찰(2종) ①사건처리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통지서, ②사건처리진행상황에 대한 결과통지서 검찰(20종) ①고소(고발,진정)사건 수사중간통지서, ②고소(고발,진정)사건 수사지휘통지서, ③공판개시 통지서, ④기소유예처분통지서 등 법원(2종) ①전자약식 약식명령등본, ②전자약식 경정결정등본 법무부(3종) ①신상정보 등록통지서, ②등록정보 폐기 사실 통지서, ③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 통지서

4) 형사사법 정보체계 협의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의해 구성,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 협의

범죄피해자지원

- 지원제도 안내 및 기관안내
-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 어떤 기관을 찾으시나요?
- 피해유형별 대처요령
- 피해자 사건조회(경찰사건/검찰사건)

※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는 컴퓨터 PC와의 환경 차이로 일부 서비스의 제한이 있습니다.

- 2010. 7. KICS를 개통함과 동시에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는 컴퓨터 PC에서 처음 오픈되었습니다. 그 후 2013. 6.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오픈하였고, 2016. 6. IOS 운영체계도 오픈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 9. 기준)

■ 범죄 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제공

- 사건 피의자 · 피고인 본인의 사건검색 서비스에 이어 2013. 8. 주요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사건조회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 인터넷 · 모바일 서비스 제공이 가져온 변화

- 음주운전 벌금미납으로 체포된 B씨

Before	Af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벌금? 이사 가느라 고지서 못 받았는데 체포라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나 이메일 알림서비스로 신속하게 받아보니 놓칠 일도 없고 편리해

-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A씨

Before	Af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무에게도 말 못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사법포털에서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통합검색으로 도와줄 곳 찾았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을 통한 새로운 도약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필요성



⇒ 2018.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실시

- ▶ KICS는 2010년 서비스 오픈 후 형사사법업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업무의 근간 기반시스템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된 지 14년, 구축된 지 10년을 앞 둔 현재, 고도화 · 지능화 하는 범죄에 대처하고 높아지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다소 부족한 시스템적인 한계에 직면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선에서는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 이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에서는 2018년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을 위한 BPR/ISP사업’을 법무부 · 검찰 · 경찰 · 해양경찰과 협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2018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차세대 KICS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선정, 사업 예산 확보
- ‘차세대 KICS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수행(’18. 5. ~ ’18. 12.)
- 2019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19. 4.)
- 예비타당성 심의 및 예산 확정(’19. ~ ’20.)
- 「차세대 KICS 구축 사업」 실시(’21.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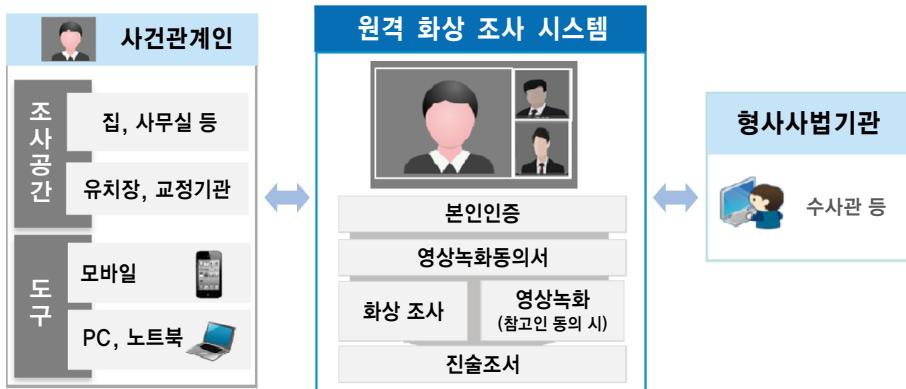
- ▶ BPR/ISP사업을 통해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의 기본 방향과 미래 모델이 설계되었으며, 실제 구축 사업 완료시 형사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반 제공과 함께 형사사법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투명한 형사절차를 실현하여 국민들의 형사사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과제

■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원격 화상조사

참고인 조사 몇 분 받으러 수사기관에 나가야 하나..
이제 스마트폰 하나라도 언제 어디서나 화상조사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접근 편의성 향상



- 참고인 조사에 우선 적용 후 교정기관 수용자 조사에 확대 적용 검토
- 기관 출석에 따른 국민의 시간과 비용 절감 및 효율적 조사 가능

■ 지능형 형사사법 도우미(챗봇)

어려운 형사절차, 콜센터 물어봐도 여기저기 다시 전화해야
똑똑한 인공지능 챗봇이 언제 어디서든 궁금한 정보 안내



지능형 챗봇으로 언제 어디서든 궁금한 내용 확인

형사사건절차용어 안내

- 형사사건 처리절차 안내
- 법률용어 안내

나의 사건진행현황 안내

- 사건관계인 관점에서
- 사건진행현황 종합 안내

벌과금 안내부터 결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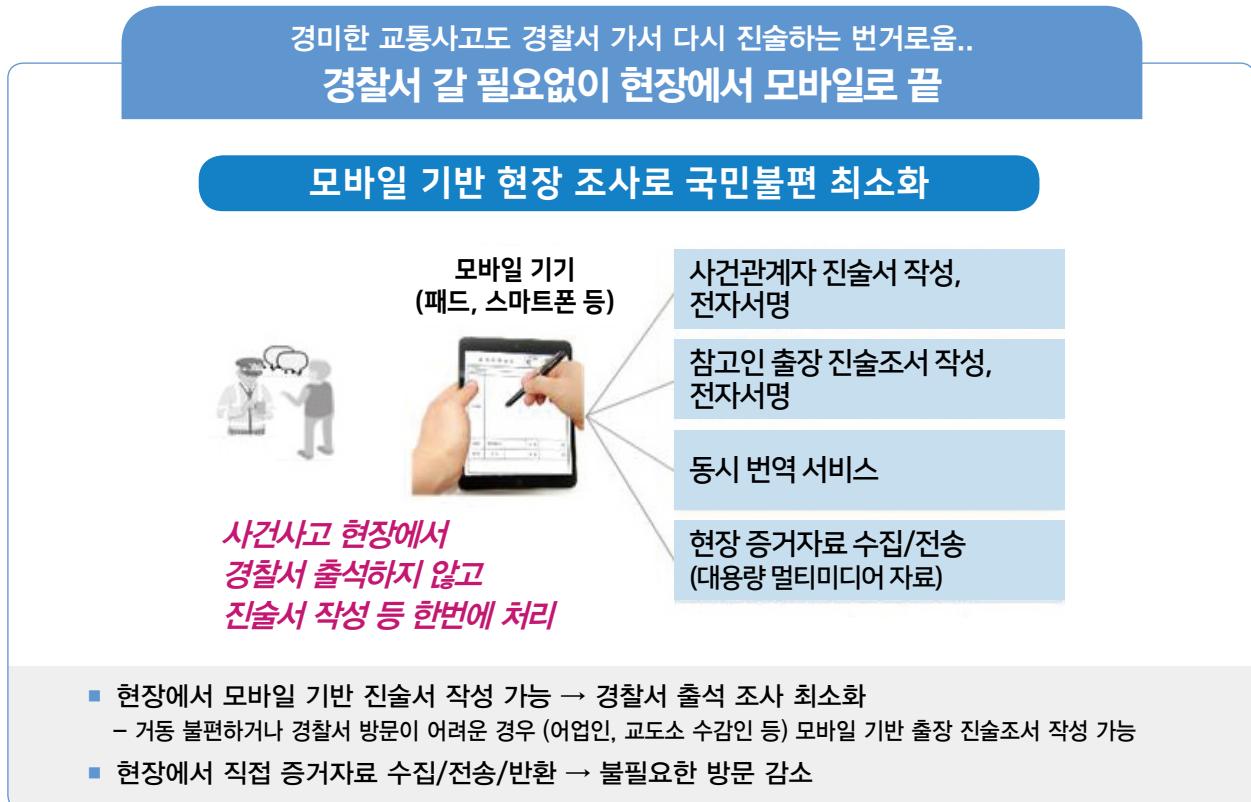
- 내 벌과금 확인은 물론,
벌과금 납부화면까지 바로 연결

- 형사사법 포털 (웹 및 모바일)에 '대화형 챗봇' 탑재
- 국민 눈높이에서 형사사법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 → 대국민 체감 만족도 향상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확대



■ 현장중심 업무처리를 위한 모바일 KICS 도입



참고자료

1. 형사사법포털 휴대폰 서비스 사용방법

■ 형사사법포털 앱 설치 및 이용방법

① 앱 설치하기



'앱 스토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 '형사사법포털' 키워드로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②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지문 등록



앱의 「공인인증센터」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오거나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지문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조회서비스 및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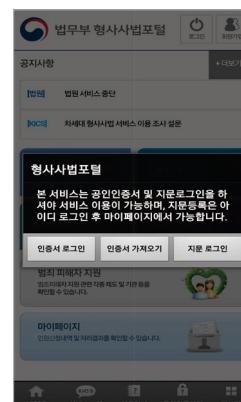
③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접속 후, 서비스 이용하기

A. 공인인증서 / 지문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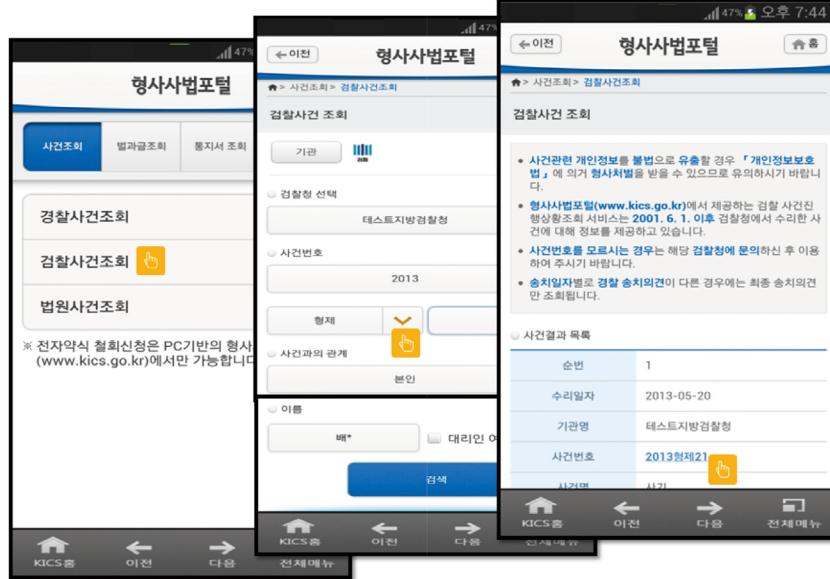
사건조회, 벌금조회, 통지서조회, 민원신청, 마이페이지 > 나의사건 목록 조회

B. 아이디 / 간편번호 / 패턴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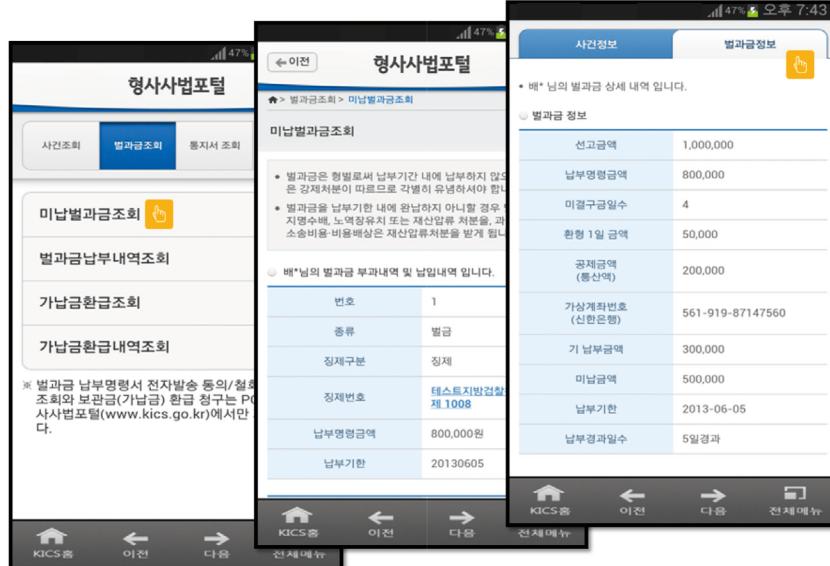
민원예약신청,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처리 결과조회



C. 사건조회 (예 : 검찰사건 진행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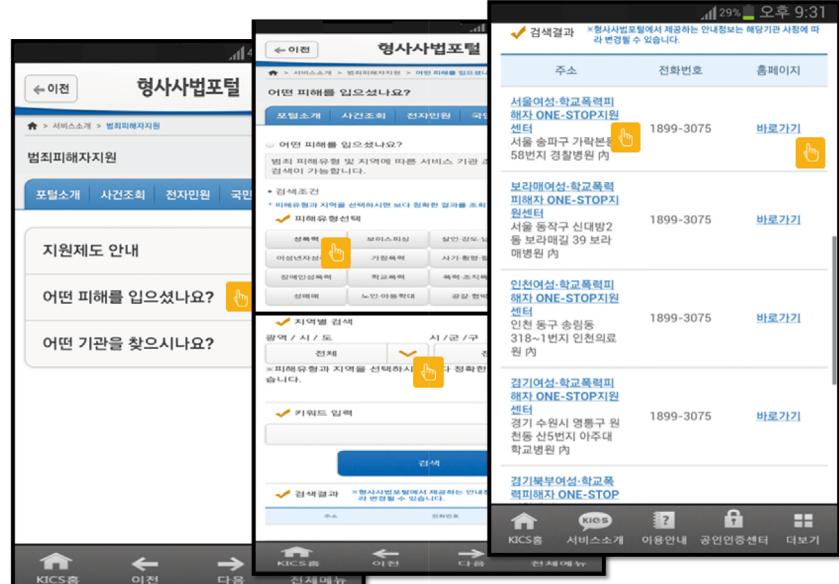
D. 벌과금조회 (예 : 미납벌과금 조회)



E. 검찰 통지서 조회 (예 :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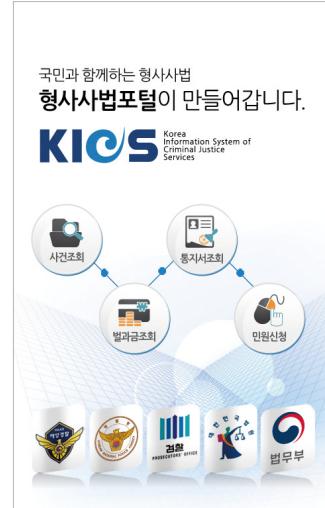
F.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기관 검색



■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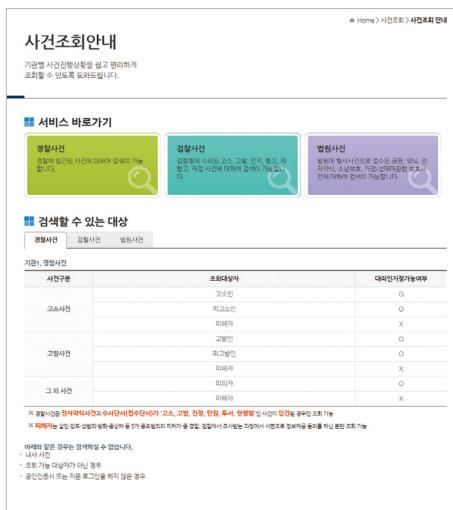
① 형사사법포털 및 모바일앱(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접속 및 로그인

– 범죄피해자가 관련 사건조회를 위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및 모바일앱에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으로 로그인합니다.



② 사건조회 메뉴 선택

– 형사사법포털 또는 모바일앱 메인화면의 사건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③ 경찰사건조회 (검색조건입력)

– 조회하고자 하는 경찰청과 경찰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피의자와의 관계(피해자)를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사건결과 목록이 조회됩니다.

④ 경찰사건조회 (상세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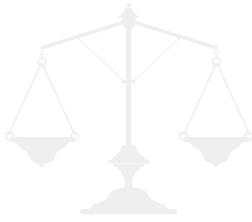
– 검색된 사건결과 목록에서 사건번호 및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사건상세정보가 조회됩니다.

⑤ 검찰사건조회 (검색조건입력)

- 조회하고자 하는 검찰청과 검찰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피의자와의 관계(피해자)를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사건결과 목록이 조회됩니다.

⑥ 검찰사건조회 (상세조회)

- 검색된 사건결과 목록에서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사건상세정보가 조회됩니다.



2. 형사사법정보서비스 관련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리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18., 2014. 11. 19., 2017. 7. 26.〉

1.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5.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형사사법포털"이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통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4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의 기본방향
2.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조직 및 체계에 관한 사항
3. 전자화 대상 문서 등의 선정·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에 따르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전자화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공개, 정보보호 대책 등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



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4. 11. 19., 2017. 7. 26. >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1항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활용할 때 시스템에서 정하는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통할 때에는 그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제8조(시스템의 운영 주체) ① 시스템의 운영·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한다. 다만,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지원하는 공동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3. 18., 2014. 11. 19., 2017. 7. 26.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에 1회 개최한다.

②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임시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은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④ 협의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의 공동 활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스템을 통한 형사사법정보의 공개 등 형사사법포털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시스템의 대상, 범위, 변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운영에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 운영상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할 때 형사사법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8., 2014. 11. 19., 2017. 7. 26. >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을 각각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명하는 치안정감,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경찰청 차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 검찰청 및 경찰청"을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약식전자문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4편제3장에 따른 약식절차 등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약식절차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6. 1. 6. >

1.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 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형사사법포털"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6.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7.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8.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9. "전자적 처리절차"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이용하여 약식사건(「형사소송법」 제4편제3장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을 말한다) 및 불기소사건(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사건을 말한다)을 처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대상 사건) ① 이 법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중 피의자가 전자적 처리절차에 따를 것을 동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6., 2018. 12. 24. >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152조제1호 및 제1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되는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해당하는 사건
- ② 이 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 중 같은 항 본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신설 2016. 1. 6.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자적 처리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6. >

1.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과 그하지 아니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거나 심판하는 경우
 2. 피의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동의를 철회한 경우
 3. 추가적인 증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수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전자적 처리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그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해당 사건의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6. >



1.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과 그로하지 아니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전자적 처리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가. 추가적인 증거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등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경우

제4조(피의자의 동의 및 철회) ① 제3조제1항의 동의는 피의자가 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 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서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라 있는 사실 을 통지받을 전자적 수단(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말한다)을 적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제3조제1항의 동의를 철회하려면 약식명령 청구 전까지 종이문서나 전자문 서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철회를 접수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그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 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해당 사건의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동의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는 전자서명을,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행정전자 서명을 하여야 하고, 제3항의 철회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때 피의자는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작성)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개정 2016. 1. 6.>

1.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2. 체포 및 석방에 관한 문서
3.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결과 및 음주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4.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 결과 및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5.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6. 그 밖에 수사상 필요한 문서

② 검사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시스템을 통 하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 하여 전자문서로 한다. <신설 2016. 1. 6.>

④ 검사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 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한다. <신설 2016. 1. 6.>

⑤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 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개정 2016. 1.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전자문서 작성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 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⑦ 제6항의 행정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개정 2016. 1. 6.>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전자문서의 간인(間印)은 면수(面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제6조(전자화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전자적 처리절차에서 제출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한다. <개정 2016. 1. 6.>

② 전자화문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과 형태가 같게 변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화문서 작성자의 소속 기관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문서 작성자의 소속 기관이 전자화대상문서를 다른 기관에 송부한 경우에는 송부받은 기관에서 전자화대상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제7조(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제출) 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같은 조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 및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전자화문서를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로서 법원에 제출한다.

제8조(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통지) ① 법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약식명령을 시스템에 올린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동의서에 적힌 전자적 수단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한 때에 약식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올린 사실을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송달을 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5조부터 제3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송달과 통지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력물로써 하는 약식명령 등의 송달) ① 법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력물은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력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출력물은 그 전자문서의 등본으로 본다.

1.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 식별번호

2. 복사 및 위조·변조의 방지 표지(標識)

제10조(공판절차 등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의 처리) ① 「형사소송법」 제450조 또는 제453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 법원은 그때까지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증거서류를 검사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이를 받은 검사는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전자문



서와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③ 검사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신설 2016. 1. 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6. >

[제목개정 2016. 1. 6.]

제11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집행 지휘)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위임 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건에 관한 약식재판 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자적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 6. >

부칙 <제16037호, 2018. 12. 24. > (도로교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48조의2제2항"을 "제148조의2제3항"으로 한다.

